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6. 21 선고 2021나21684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의소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6. 21 선고 2021나216842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8. 12 선고 2020가단80451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1.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수

담당변호사 김혜연

2.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애숙

변 론 종 결 2022. 5. 17.

판 결 선 고 2022. 6. 21.

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8. 12. 선고 2020가단80451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 B는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황현찬, 판사 오성우, 판사 박이규